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3조)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6”을 “22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2”를 “73”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6”을 “77”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5년 7월 31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한시정원</u>	<u><삭 제></u>
<u>제13조(한시정원) 방송분야 외주</u> <u>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u> <u>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u> <u>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u> <u>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u> <u>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u> <u>을 위원회에 두며, 별표 4의 정</u> <u>원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u> <u>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u> <u>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u> <u>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체</u> <u>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u> <u>한다.</u>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 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u><삭 제></u>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3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 ----- <u>2025년 3월 31일</u>-----.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은 <u>2023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7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3</u>	<u>234</u>	+1
·	·	·	
·	·	·	
일반직 계	<u>226</u>	<u>227</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2</u>	<u>73</u>	+1
·	·	·	
·	·	·	

[별표 1의3]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3</u>	<u>234</u>	+1
·	·	·	
·	·	·	
일반직 계	<u>225</u>	<u>226</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6</u>	<u>77</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